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86 발의연월일: 2022. 4. 5.

발 의 자:유기홍・양정숙・강민정

남인순 • 윤영덕 • 이학영

김두관 · 임호선 · 오영환

최기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제정되어,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7월 출범을 앞두고 있음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는 규정을 두고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규정에 부합하도록 교육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일부를 기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 하는 것과 같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위임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법률 제 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교육부장관에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교육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u>장관에게,</u> 교육부장관은 그 임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	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
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